

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최기찬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인제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
박칠성, 봉양순, 송도호,
신동원, 신복자, 왕정순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병도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
정준호, 한 신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전통사찰의 지원은 상위법상 '문화예술진흥법', '문화산업진흥 기본법'과 별도의 법률인 '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.
- 특히,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와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음.
- 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·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사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나.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·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사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서울특별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
2.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
3.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·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·보완의 권고
4.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

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역사·전통문화·전통사찰·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,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의 적용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과 제5조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적용한다.

제7조(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)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·관리·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

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 2.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·연구 및 문화행사
 3.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·정비사업, 전통사찰 보존·관리·활용에 필요한 경비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